

# Omnibus Implementing Regulation on Taxation

Omnibus Implementing  
Regulation on Taxation <sup>p1</sup>

1. Income Tax Aspects <sup>p1</sup>

2. VAT Aspects <sup>p2</sup>

3. General Tax Aspects <sup>p3</sup>

4. Transitional Rules <sup>p4</sup>

정부령 2021년 제 9 호(GR-9)는 옴니버스 법의 시행규정 중 하나로서  
발행되었습니다. GR-9은 옴니버스 법 중 세법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2021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 GR-9이 세법개정 사항의 모든 시행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옴니버스 법하에서 개정된 많은 세법의 개정사항은 재무부  
규정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GR-9의 일부 변경사항은 신규 규정으로 적용되거나 기존 규정<sup>123</sup>의  
변경사항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반면에, 일부 규정은 신규 규정의 추가없이  
옴니버스 하에서 변경사항의 조정에 해당합니다. 동 옴니버스 플래쉬에서는  
추가적인 규정을 제공하는 주요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1. 소득세 관련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채권(Bond)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옴니버스 법 하에서, 정부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추가적인 정부령을 통하여 인하할 예정입니다. GR-9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10%(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로 인하하였습니다.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은 채권이자로 계상되는 모든  
유형의 소득에 적용되며, 처분시 누리는 자본이득(즉, 할증 및 할인)을  
포함합니다. 동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은 동 GR의 효력일로부터 6개월이

<sup>1</sup> GR No.94 Year 2010 on Income Tax as amended by GR No.45 Year 2019

<sup>2</sup> GR No.1 Year 2012 on Value Added Tax (VAT)

<sup>3</sup> GR No.74 Year 2011 on General Tax Provisions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2021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인하된 세율의 효력발생일 이전에는 채권이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기준 GR-16<sup>4</sup>이 적용됩니다.

## 내국 배당의 과세면제

옴니버스 법은 인도네시아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이 다음의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배당소득을 인도네시아 내에 특정기간 동안 재투자 하는 경우; 또는
- 세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

인도네시아 회사가 지급하는 내국 배당은 더 이상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세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재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개인 거주자가 재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투자에 대한 세부사항 및 배당세금 납부에 대한 매커니즘은 별도의 재무부 규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 2. 부가세 관련

### 위탁 재화 (Consignment goods)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Pengusaha Kena Pajak/PKP*)의 위탁재화의 공급은 옴니버스 법 하에서 더 이상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GR-9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동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수탁자가 실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여전히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세 과세의 시점만이 변경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GR-9에 따른 이러한 유형의 공급의 과세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위탁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 시점은 재화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채권 또는 매출로 인식된 시점으로 지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PKP인 위탁자가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한 시점으로 봅니다. 부가세법의 기준 규정에서는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화가 수탁자에게 공급된 시점을 부가세 과세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b. 수탁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가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되거나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는 제3자에게 공급되는 시점;
  - 재화가 무상공급(free gift), 자가사용, 본지점거래 또는 지점간 거래로써 직접 재화의 수령자에게 공급되는 시점;

---

<sup>4</sup> GR No.16 Year 2009 (GR-16) as lastly amended by GR No. 55 Year 2019

- 재화가 택배서비스(courier service) 또는 운송회사로 공급되는 시점;
- 재화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채권 또는 매출로 인식된 시점으로 지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PKP 인 위탁자가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한 시점.

### **소매업자(Retailer, *Pedagang Eceran*)의 부가세 의무**

GR-9 은 소매업자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구매자 또는 서비스 사용자에게 공급(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공급 포함)하는 부가세 과세등록기업(PKP)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 정의는 구매요청서, 주문서 또는 계약서가 동반되지 않는 현금 및 운송(cash and carry)거래를 요구했던 기존의 범위보다 잠재적으로 넓지만 단순화하였습니다.

소매업자는 부가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가세징수자(VAT collector)인 제 3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 지정과 부가세 준수의무 매커니즘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재무부 규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 **현물출자(*Inbreng*)**

옴니버스 법에서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과세대상 재화의 이전(현물출자)에 있어, 공급자와 수령자가 모두 PKP 인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GR-9 은 현물출자가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물출자가 합의된 시점, 현물출자 계약서가 체결된 시점 또는 현물출자 계약이 공증된 시점에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일반 세무 행정 관련**

### **특정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기장의무**

국세기본법(KUP)에 따르면, 사업을 영위하거나 프리랜서인 개인은 반드시 기장(bookkeeping)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이 순손익과 세금 계산에 있어 간주법을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에는 기장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프리랜서가 아닌 개인 및 간주법을 적용받는 개인은 기장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나 기록(*pencatatan*)의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옴니버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GR-9 은 개인납세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장의무가 요구되지 않고 기록의무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대하여는 재무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며, 사업의 자본규모, 총매출액, 사업의 설립 시점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의 지위를 고려하면, 동 신규 규정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기장의무에 대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대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무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GR-9은 납세의무자와 세무당국을 위하여 세무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서류 및 서명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 전자정보 및 거래와 관련한 법에 따라 세무상 권리와 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은 인증받지 않거나 재무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 세무당국

- 세무당국은 결정문 또는 과세통지서를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동 문서는 하드카피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문서가 전자로 발행된 경우에는 하드카피문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발송일 또는 수령일은 DGT 행정시스템 또는 DGT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상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GR-9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수행이 가능한 세무상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시행규정은 별도의 재무부 규정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4. 경과규정

GR-9은 옴니버스 법을 통한 일부 개정사항의 적용에 대하여 Cut-off 시점을 옴니버스 법 발효일(즉, 2020년 11월 2일)로 적용할 수 경과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과 규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2020년 11월 2일부터 발행되는 다음의 과세관련 통지서와 관련하여 재무부가 발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지연이자가 적용되는 시점이 2020년 11월 2일 이전인 경우 포함):

- 세금결정통지서(Tax Assessment Letters);
- 세금징수통지서(Tax Collection Letters);
- 잘못된 세금신고서에 대하여 자진수정신고를 수행한 경우.

#### b. 세무조사 개시(사전증거를 통한) 후 조세범죄 수사의 개시 전에 자진공시를 한 경우, 자진공시가 2020년 11월 2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 미납세금의 100%가산세 적용함(이전에는 150% 적용).

- c. 납세의무자가 조세범죄의 수사를 중단요청하는 경우, 중단요청이 2020년 11월 2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 미납세금의 3 배수의 패널티가 적용됨(이전에는 4 배수 적용).
- d.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불성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납세의무자는 2020년 11월 2일부터 발행되는 세금징수통지서(STP)부터 과세표준의 1%를 패널티로 부과함(이전에는 2% 적용). 그러나, PKP 인 비소매업자가 구매자 및 서비스 수령자의 정보(identity)를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GR-9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2021년 3월 4일)까지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e. 2020년 11월 2일 이후에 발행된 결정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interest compensation)을 지급하는 경우(가산금 적용기간은 2020년 11월 2일 이전인 경우), 이자율은 재무부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함.
- f. PKP 가 생산실패로 인하여 생산전 기간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020년 11월 2일부터 세금결정통지서(SKP)를 통하여 납부가 적용됨(이전에는 세금징수통지서(STP)).
- g. 국세환급가산금이 취소된 경우에 2020년 11월 2일까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징수통지서(STP)를 통하여 징수함(동 사항은 GR-74에 규정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mail : [taehun.jung@pwc.com](mailto: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mail : [inhyuk.park@pwc.com](mailto:inhyuk.park@pwc.com))



#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mailto:adi.pratikto@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mailto:antonius.sanyojaya@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mailto:ay.tjhing.phan@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mailto:brian.arnold@pwc.com)

**Melli Darsa**  
[melli.darsa@pwc.com](mailto:melli.darsa@pwc.com)

[www.pwc.com/id](http://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mailto: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1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